

##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

제 1 조 (목적)	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회원의 의무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.</li><li>2.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,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.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(윤리교육 2시간 포함)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,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.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.</li><li>3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</li><li>4.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,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.</li><li>5. 전문회원, 정회원,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.</li></ol>
제 3 조 (회원의 권리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li><li>2.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,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.</li><li>3.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</li><li>4. 정회원, 전문회원,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</li></ol>
제 4 조 (회원의 입회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</li><li>2.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,000원으로 한다.</li><li>2)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.</li></ol></li><li>3.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관련 조항(제5조)을 준수한다.</li><li>2)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,000원으로 하고, 정회원의 연회비는 35,000원으로 하며,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.</li><li>3)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,000원으로 하고, 준회원의 연회비는 20,000원으로 하며,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.</li><li>4)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.</li></ol></li></ol>
제 5 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혹은 학회(원)에 대한 위해 행동이 보고된</li></ol>

<p>(회원의 징계)</p>	<p>회원에 대해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징계안을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이사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대면 회의를 통해 인준한다.</li> <li>3.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제명</li> <li>2) 자격(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) 박탈 및 정지</li> <li>3) 경고</li> </ol> </li> <li>4. 회장은 이사회가 인준한 징계안을 집행하고 상벌 및 윤리이사는 집행 결과를 해당 학회원 혹은 전체 학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.</li> <li>5.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은 자격을 회복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, 경고를 받은 회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위원회 위원, 지회장, 연구회장에 임명 혹은 위촉될 수 없다.</li> </ol>
<p>제 6 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</li> <li>2.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</li> <li>3. 회장, 대외부회장,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, 정신건강이사, 자격관리이사, 정책 및 제도이사, 제1편집이사, 제2편집이사, 상벌 및 윤리이사,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,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li> <li>4. 수석부회장, 학술부회장, 총무이사, 홍보 및 정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교육이사, 인권 및 회원권익이사,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li> </ol>
<p>제 7 조 (임원의 임무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, 수행한다.</li> <li>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.</li> <li>3.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</li> <li>4.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.</li> <li>5.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</li> <li>2)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,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</li> </ol> </li> <li>6.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'웹진' 발행 관련 업무</li> <li>2)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</li> <li>3) 홈페이지 관련 업무</li> <li>4)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</li> </ol> </li> <li>7.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</li> <li>2)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</li> </ol> </li> <li>8.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</li> </ol>

- 1)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
- 2)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
- 3)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
- 4)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
9.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
  - 2)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
  - 3)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
  - 4)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
  - 5)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
10.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정신건강복지법)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
  - 2)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
11.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
  - 2)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
  - 3)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
  - 4)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
12.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, 제안 등 의 관련 업무
  - 2)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
13.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
본회에서 발행하는 "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"의 편집,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
14.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
본회에서 발행하는 "한국심리학회지: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"의 편집,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
15.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
  - 2)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
16. 인권 및 회원권익이사는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 한다.
17.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)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
  - 2)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

	<p>18.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재난, 자살, 청년실업,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</li> <li>2)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</li> </ol> <p>19.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</li> <li>2)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</li> </ol> <p>20.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.</p>
<p>제 8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</p>	<p>1.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~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(단,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).</p> <p>2.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2)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,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,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3)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, 정신건강이사,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4)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,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,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5)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, 정신건강이사,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6)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li>7)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이사, 자격관리이사,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,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</li> </ol> <p>3.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 9 조 (대외 수임)</p>	<p>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,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</li> <li>2)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</li> <li>3)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</li> </ol>
<p>제 10 조 (총회의 개최)</p>	<p>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</p>
<p>제 11 조 (지회의 설립 및 운영)</p>	<p>1.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,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.</p> <p>2.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3.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.</p>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</li> <li>5.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,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.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2 조 (연구회의 설립과 운영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.</li> <li>2.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(준회원은 1/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)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.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, 주요 활동내용, 회원의 명단 등이다.</li> <li>3.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.</li> <li>4.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단,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</li> <li>5.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. 이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.</li> <li>6.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.</li> <li>7. 연구회의 활동 내용이나 사업은 매년 학회에 보고하며,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가 없을 경우, 활동 의사 확인 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또는 해산될 수 있다. 연구회 정비 및 해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</li> <li>8.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.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3 조 (사무국의 운영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</li> <li>2.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4 조 (재정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, 각종 수익금,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</li> <li>2.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 한다.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5 조 (임상심리전문가)</p>	<p>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</p>

자격규정에 관한 사항)	에 따른다.
부 칙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,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,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.</li> <li>2.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3.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4.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5.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6-1)항, 6-4)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.</li> <li>6.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.</li> <li>7.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8.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9.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0.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1.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2.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3.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4.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5.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6.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7.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8.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19.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0.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1.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2.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3.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4.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5.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6.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7.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8.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9.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30. 본 운영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31. 본 운영세칙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32. 본 운영세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33. 본 운영세칙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/ol>